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77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5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5
2.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6
※ 참고자료	9
1. UN 아동권리협약 및 제3선택의정서 개요	10
2. 제3선택의정서 (국문본)	11
3.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진정제도 허용 현황	20
4. 아동 권리 관련 주요 협약 현황	21
5.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제3선택의정서의 진정제도 비교	22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김예지의의원 등 22인
2. 제안일자 : 2025년 5월 7일
3. 회부일자 : 2025년 5월 8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국제조약으로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의정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UN 아동권리협약」, 2004년 9월 24일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

정서」를 비준했지만 2011년 11월 19일 채택되어 2025년 3월 기준 전 세계 52개국이 비준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여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침해에 대한 진정·구제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UN 아동권리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국가가 아동을 포함한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정서임.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 및 집단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정서임.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 2004년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지만, 2011년 채택된 아동 권리침해에 대한 진정·구제조치를 보장하는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은 아동이 국내 절차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UN 아동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조치를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음.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

전해에서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했고, 2023년 진행된 UN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도 우리나라에 비준을 권고하였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위해 아동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보장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UN 아동권리협약”) 및 개인진정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3선택의정서”)¹⁾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위한 차별금지 등의 기본원칙과 아동의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UN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제3선택의정서는 2011년 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음.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1990년 9월 서명 이후 1991년 11월에 가입하였으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1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 아동의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2선택의정서”)는 2000년 채택, 2002년 발효하였음.

그러나 제3선택의정서의 경우 해당 의정서가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해 아동이 직접 아동권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침해에 대한 타국의 통보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유보하였음.

2025년 9월 현재 당사국 53개국²⁾인 제3선택의정서는 전문 및 24개조

1) 참고자료 1. UN 아동권리협약 및 제3선택의정서 개요 참조

2) UN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은 2025년 9월 현재 196개국임

로 구성³⁾되어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인 및 집단 등의 진정제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김예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34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고, UN 아동권리협약과 제1선택의정서, 제2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보장과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는 것임.

2. 결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안 주문 제1호는 대한민국 정부에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고, 안 주문 제2호는 국회가 정부의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있음.

정부의 제3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조사권

3) 참고자료 2. 제3선택의정서 (국문본) 참조

및 후속조치의 주권침해 우려,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제도 및 제반여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아동권리위원회의 조사권 및 후속조치의 주권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유사한 진정제도를 비준한 사례⁴⁾가 있는 점,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인정 관련 선언이 철회 가능하다는 점⁵⁾ 등을 고려할 때 국가주권의 과도한 제약의 우려는 적은 것으로 보임.

다만,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여건 등과 관련해서는 UN 아동권리협약 내용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절차에 있어 진정주체 및 조사대상 등에 있어 상이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또한, 제3선택의정서와 유사한 취지로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⁷⁾과 「아동기본법안」⁸⁾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률안들을 포함하여 국내 법체계의 정비와 함께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개인진정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있고 집단진정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있으며(참고자료 3.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진정제도 허용 현황 참조), 국제인권조약위원회의 조사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고문방지협약 제20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있음.

5) 제3선택의정서 제13조제8항 이 조 제7항에 따라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5.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제3선택의정서의 진정제도 비교

7) 의안번호 2211325호(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25.07.07. 발의)

8) 의안번호 2201334호(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24.07.03. 발의), 의안번호 2210359호(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5.05.02. 발의)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리보장 및 권리침해 구제의 실효성 보장 등을 고려할 때, 비준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 법체계와의 관계와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제3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국내법과의 조화 등 국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조 하에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70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UN 아동권리협약 및 제3선택의정서 개요

【참고자료 2】 제3선택의정서 (국문본)

【참고자료 3】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진정제도 허용 현황

【참고자료 4】 아동 권리 관련 주요 협약 현황

【참고자료 5】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제3선택의정서의 진정제도 비교

[참고자료 1] UN 아동권리협약 및 제3선택의정서 개요

<UN 아동권리협약 개요>

- (정식명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연혁) 1989. 11. 유엔 총회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1990. 9. 서명, 1991. 11. 가입
- (내용) 전문, 3부 54개조로 구성
 -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위한 차별금지 등의 기본원칙과 아동의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명시

<제3선택의정서 개요>

- (정식명칭) 진정절차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연혁) 2011. 12. 유엔 총회에서 채택, 2014. 4. 발효
- (내용) 전문, 4부 24개조로 구성
 -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집단 진정제도,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심리 권한 및 조사 절차 등을 규정

[참고자료 2] 제3선택의정서 (국문본⁹⁾)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 모든 인류가족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에 대한 인정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고려하고,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의 당사국이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견해,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여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각 아동에게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을 재확인하고,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 그리고 존엄성 및 발전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아동의 신분을 재확인하며, 아동의 특별하고 종속적인 신분이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모색에 있어서 아동에게 실제적인 곤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 의정서가 권리침해에 대한 아동의 진정 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지역적 기제를 강화하고 보완할 것임을 고려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모색에 있어서 최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구제방법이 모든 수준에서 아동 친화적 절차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국내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구제방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가적 기제를 개발하도록 당사국에 권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 및 여타 유관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상기하고, 그러한 국가적 기제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협약 및 적절한 경우 이것의 선택의정서, 즉 아동매매·아동 성매매·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더욱 더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로 하여금 이 의정서에서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9) 국가인권정보시스템(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제1부 일반 조항

제1조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의해 규정되는 바와 같은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2.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원칙

이 의정서에 의해 부여받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지침으로 삼는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권리와 견해를 존중하며,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한다.

제3조 의사규칙

1.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의해 부여받은 기능을 행사할 때 준수할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그럴 경우, 위원회는 아동 친화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이 의정서 제2조를 고려한다.
2. 위원회는 아동의 대리인에 의한 아동의 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책을 그 의사규칙에 포함시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통보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보호조치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 이 의정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 또는 협조한 결과로 어떠한 인권침해, 학대 또는 위협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관련 개인 또는 일단의 개인들의 신원은 그(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2부 통보절차

제5조 개인 통보

1.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자로서, 동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음의 문서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동 당사국의 침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일단의 개인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a) 협약

(b) 아동매매·아동 성매매·아동 음란물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c)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2. 대리인이 개인이나 일단의 개인들을 대신해서 통보를 제출할 경우, 진정을 제출한 그 대리인이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을 대신해서 행동함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잠정조치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판결 이전에 언제라도,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잠정조치의 채택을 긴급히 고려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통보의 허용 여부나 본안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리적격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a) 통보가 익명으로 제출되는 경우

(b) 통보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

(c) 통보가 통보 제출권의 남용에 해당되거나, 협약 및/또는 그 선택의정서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d) 동일한 사안이 위원회에 의해 이미 심사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거나 심사 중일 경우

(e)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방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단, 구제방법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f) 통보가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g)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관련 당사국에서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단, 그 사실이 발효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h) 국내적 구제방법이 소진된 후 1년 이내에 통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 진정인이 그 시한 내에 통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8조 통보의 송부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 무관하게 통보가 심리부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의정서에 따라 비밀로 제출받은 통보에 대해 가급적 빨리 관련 당사국에게 고지한다.
2. 당사국은 해당 사안과 자국이 제공했을 수도 있는 구제방법을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가급적 빨리 자국의 답변을 제출한다.

제9조 우호적 해결

1. 위원회는 협약 및/또는 그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제반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중재한다.
2. 위원회의 후원 하에 성립된 우호적 해결에 대한 합의는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의 심리를 종결한다.

제10조 통보의 심리

1. 위원회는 제출받은 모든 증거서류에 입각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가급적 신속하게 심리한다. 단, 그 증거서류는 관련 당사국에도 송부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사할 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3. 잠정조치를 요청했을 경우, 위원회는 통보의 심리를 더 신속히 추진한다.
4.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통보를 심사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4조에 따라 취한 조치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그럴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상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치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5. 통보를 심사한 후, 위원회는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관련 당사국에 지체 없이 송부한다.

제11조 후속조치

1.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며,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감안하여 취했거나 구상 중에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 답변을 가급적 빨리,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2. 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협약 제44조, 아동매매·아동 성매매·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2조, 또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에 따른 당사국의 차기 보고서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견해나 권고에 응하여 또는 우호적 해결에 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간 통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동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음의 문서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선언할 수 있다.
 - (a) 협약
 - (b) 아동매매·아동 성매매·아동 음란물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c)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2.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 또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이 제출하는 통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협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제반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을 중재한다.
4.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그 선언서의 사본을 다른 당사국들에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이 조에 의거하여 이미 제출된 통보의 주제가 되는 문제의 심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에게 선언의 철회가 통지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 조에 의거한 당사국의 통보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는다.

제3부 조사절차

제13조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한 조사절차

1. 협약 또는 그 선택의정서, 즉 아동매매·아동 성매매·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또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나타내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접수할 경우, 위원회는 그 정보의 심사에 협조할 것 및 이를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견해를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동 당사국에 요청한다.

2.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견해 및 이용 가능한 여타 신빙성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도록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조사가 정당한 것이고 관련 당사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사는 동 당사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그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실시하며, 모든 진행단계에서 관련 당사국의 협조를 구한다.

4. 그러한 조사의 결과를 심사한 후, 위원회는 논평 및 권고와 함께 그 조사결과를 관련 당사국에 지체 없이 송부한다.

5.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가 송부한 조사결과와 논평 및 권고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가급적 빨리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6. 이 조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 관한 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의정서 제16조에 규정된 보고서에 그 절차의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 또는 가입할 때, 제1항에 열거된 문서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명시된 권리와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8. 이 조 제7항에 따라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절차에 대한 후속조치

1. 위원회는 제13조 제5항에서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필요하다면 이 의정서 제13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 응하여 취했거나 구상 중인 조치를 위원회에 고지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협약 제44조, 아동매매·아동 성매매·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2조, 또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에 따른 당사국의 차기 보고서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13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 응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부 최종 조항

제15조 국제적 원조와 협력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기술적 조언이나 원조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통보와 조사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또는 권고, 그리고 이 견해 또는 권고에 대해 당사국의 견해와 제안이 있을 경우 이것을 국제연합 전문기구·기금·프로그램 및 여타 유관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 의정서에 따라 심리된 통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상기 언급된 단체에 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 내에서 당사국이 협약 및/또는 그 선택의정서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에 관해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제16조 총회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의거한 활동의 개요를 협약 제44조 제5항에 따라 2년마다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 선택의정서의 보급 및 이 의정서에 관한 정보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유포하며, 특히 당사국이 관여된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하는 성인과 아동이 공히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18조 서명, 비준, 가입

1. 이 의정서는 협약 또는 협약의 두 선택의정서 중 하나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 또는 협약의 두 선택의정서 중 하나를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 또는 협약의 두 선택의정서 중 하나를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가입서가 기탁됨으로써 발효된다.

제19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 이 의정서는 동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20조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침해

1.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당사국이 협약 및/또는 협약의 두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위원회는 이 침해에 대해 전적으로 권한을 가진다.

2.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동 국가의 의무는 동 국가에서 이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발생하는 협약 및/또는 협약의 두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의 침해에만 관련된다.

제21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 송부하고, 동 개정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송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의 1/3이 그러한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그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송부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숫자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의 당사국 숫자의 2/3에 달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그 후, 개정안은 당사국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동 당사국에서 발효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22조 폐기

1.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의 발효일 전까지, 폐기는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 또는 제13조에 따라 시작된 조사에 대해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사무총장에 의한 수탁 및 통지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2.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모든 국가에 통지한다.

(a) 이 의정서에 의거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이 의정서의 발효일 및 제21조에 의거한 이 의정서 개정안의 발효일

(c) 이 의정서 제22조에 의거한 폐기

제24조 언어

1. 이 의정서는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참고자료 3]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진정제도 허용 현황

협약명	우리나라 가입일 (발효일)	진정제도		
		개인진정	집단진정	국가간 고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90.4.10 (90.7.10)	○ (선택의정서) - 90.4.10 선택의정 서 가입	X	○ (협약 제41조) - 90.4.10 협약 제 41조 수락선언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90.4.10 (90.7.10)	○ (선택 의 정 서) - 미가입	○ (선택의정서) - 미가입	○ (선택의정서) - 미가입
인종차별 철폐협약	78.12.5 (79.1.4)	○ (협약 제14조) - 97.3.5 협약 제 14조 수락선언	○ (좌동)	○ (좌동)
여성차별 철폐협약	84.12.27 (85.1.26)	○ (선택의정서) - 06.10.18 선택의 정서 가입	○ (좌동)	X
고문방지협약	95.1.9 (95.2.8)	○ (협약 제22조) - 07.11.9 협약 제 22조 수락 선언	X	○ (협약 제21조) - 07.11.9 협약 제 22조 수락 선언
장애인권리협약	08.12.11 (09.1.10)	○ (선택의정서) - 22.12.15 선택의 정서 가입	○ (좌동)	X

※ 자료: 외교부

[참고자료 4] 아동 권리 관련 주요 협약 현황

1. 아동 권리 관련 주요 협약 목록 및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25.9월)	우리나라 가입일 / 발효 ※ 유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89.11.20. (90.9.2.)	196	91.11.20. / 91.12.20. ※ 제40조제2항나호(5):상소권 보장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00.5.25. (02.2.12.)	173	04.9.24. / 04.10.24.
아동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00.5.25. (02.1.18.)	178	04.9.24. / 04.10.24.
진정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1.12.19. (14.4.14.)	53	미가입

2.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중 아동 권리 관련 협약 목록 및 우리나라 가입현황

협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25.6월)	우리나라 가입일 / 발효 ※ 유보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73.6.26 (76.6.19)	176	99.1.28 / 00.1.28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99.6.17 (00.11.19)	187	01.3.29 / 02.3.29

※ ILO는 전체 190개 협약 중 5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차별 금지, 산업안전보건)와 관련된 10개 협약을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분류

[참고자료 5]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제3선택의정서의 진정제도 비교

구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선택의정서
진정 주체	피해자, 제3자, 대리인	피해자(지원 집단), 대리인
조사 대상	아동 또는 대리인 (<u>국민/국내 거주 외국인</u> 中)	개별 아동(집단), 대리인 (제3선택의정서 비준 국가)
보호 권리	국내법, 국제인권규범상 권리	UN 아동권리협약 및 제1, 2 선택의정서
조사 절차	- 사건 적합성 여부 검토 - 피진정인/피진정기관 조사 (대면, 서면, 전화 등) - 자료제출기한(2주) - 조사처리기간(3개월) -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의결	- 사건 적합성 여부 검토 - 진정대상 당사국 조사 (서면 중심) - 자료제출기한(6개월) - 아동권리위원회 신속 심의·의결 - 당사국은 6개월 內 권고이행계획 제출
보충성 원칙	국내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피해 구제 방안	
	국내 수사·재판과 중복구제 불가 (제32조제1항제5조)	국내 구제절차 종료 이후 제기 가능 (제7조마호)
조정 절차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신속, 효율적 해결 방안	진정사건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 중재, 우호적 해결 합의시 해당 진정 심리 종결